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간의  
수입 배추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라 한다) 인증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를 희망하며 한·중 실무회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1. 목적

이 양해각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HACCP 인증에 대한 양 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양해각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에 적용한다.

3. 협력 내용

양 기관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의 HACCP 인증 및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 1) 인증 및 조사·평가는 한국의 HACCP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이 HACCP 인증을 위한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심사, 인증서 발급 등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주체이다.
- 3) 현장심사는 인증원이 선정한 중국 제3자 인증기관이 심사하고, 인증원은 다른 신분으로 현장심사에 참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원은 중국 제3자 인증기관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4) 인증원은 인증 신청 제출서류와 중국 제3자인증기관이 보고한 현장심사 결과(평가표 및 증빙자료 등)를 토대로 HACCP 인증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신청업소가 한국 HACCP 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해당 신청 업소에게 발급한다.
- 5) 인증원은 인증받은 업소의 수입식품 HACCP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중국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업소를 조사·평가한다. 그 조사·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3), 4)의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6) 한국 HACCP 마크 또는 이를 변형한 마크는 인증받은 제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해당 식품이 한국 HACCP 기준에 부합함을 나타내는 단어/문구는 표현할 수 있다.

7) 식품안전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한다.

8) 기타 협력 분야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 4. 연락처

양 기관은 이 양해각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양 기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 1) 한국 측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장
- 2) 중국 측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증감독관리사 인증국제합작처장

#### 5. 이견의 해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는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 6. 유효기간, 개정 및 종료

- 1) 이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된다. 이 양해각서는 5년 간 유효하고, 어느 한 측이 상대 측에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5년 마다 연장된다.

- 2) 이 양해각서의 종료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양해각서의 종료 의사가 통보된 시점에 진행 중이던 이 양해각서에 따른 어떠한 협력 활동의 기간이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 이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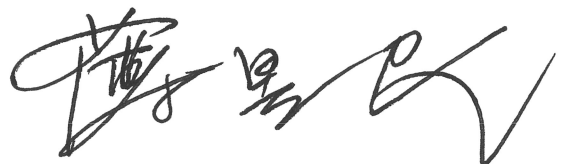
이 양해각서는 2021년 9월 27일 한국(충청북도)과 중국(베이징)에서 각각 동등하게 유효한 한국어본, 중국어본,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서명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대표하여



---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대표

---

인증감독관리사 대표